파주시공고 제2026-2994호

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,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0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

2. 개정이유

○ 「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 전부개정에 따라 투자비의 범위, 고용·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기준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, 보조금 신청·지급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토지매입비 및 시설투자비 등 투자비의 범위를 정함(안 제2조)

나. 투자비·임차료·고용·교육훈련 보조금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함(안 제3조)

다.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지원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
라. 고용보조금의 지원대상, 지원금액·기간 및 지원한도를 정함(안 제5조)

마.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, 지원금액·기간 및 지원한도를 정함(안 제6조)

바.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작성·관리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2월 10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・우편・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・주소・생년월일・연락처・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(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, 3층 306호 기업지원과(우 10930)

○ 전화 : 031)940-9723 / Fax 031)940-4539 / 이메일 km25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　　견	비 고